

정책세미나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본 자료는 2018년 4월 4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정책세미나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I. 개최 취지	5
II.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6
III.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8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12
V. 토론내용 요약	15
1. 패널토론	15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5
「이필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무)	16
「제종욱」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17
「태현수」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18
2. 참석자 Q&A	19
「심정보」 (스위스재보험 상무)	19
「김경주」 (AIG손해보험 실장)	19

I. 개최 취지

- 보증연장 서비스는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등을 해주는 서비스임
 -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 보증 기간 종료 후에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하여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경우를 의미(협약의 보증연장 서비스)
 -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확대되거나(제품의 제조사·판매사 외의 제3자), 담보 범위가 통상적인 보증보다 확대되는 경우(파손 등을 보장)도 포함될 수 있음(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

- 보증연장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보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실제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이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음
 - 당시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면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II.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현재 국내 관련 법규나 판례의 해석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서비스 계약과 보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상법, 보험업법 및 판례에서는 보험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기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임
 - 관련 법규 및 판례상 보험의 주요 요소는 '위험보장 목적', '우연한 사고',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 재산의 구축', '보험금부의 지급',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등임
 - 위 요소들은 다소 원론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보험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서비스 계약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도 보험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함
 - 보증연장 서비스도 개념적으로는 관련 법규 및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I-1 보증연장 서비스에서의 보험 요소

보험의 주요 개념 요소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우연한 사고'	제품의 고장 등 우연한 사고
'위험 보장 목적'	제품의 고장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 보장 목적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재산의 구축'	서비스 수수료를 재원으로 공동재산 구축
'확률 계산방법에 의한 급부·반대급부 균형 유지'	확률적·통계적 계산을 통해 서비스 수수료 금액 산정
'보험금부의 지급'	수리·교환 서비스 또는 수리·교환 비용 지급

- 그러나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품질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님
 -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는 제품에 내재된 위험으로 볼 수 있고 우연성이 약함
 - 개념상 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 실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음
-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도 자동차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단순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 현재 보험업법상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항은 없음

- 과거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 법령 개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이에 현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규정 없이 감독당국 실무상으로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서비스 제공자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로 한정되고 담보 범위가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로 제한되는 경우) 정도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III.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해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험 규제를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쟁점을 정리해볼 수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해 별도의 법령, 규정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 외에, 제품의 파손을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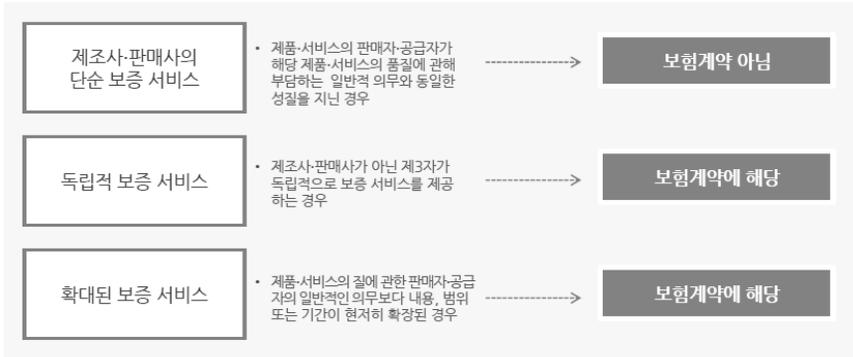
1. 영국

- 영국에서는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라 함)의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FCA는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을 두고 있음
- FCA 지침에서는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또는 확대된 보증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부담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의 경우라도, 제품의 품질에 관한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의무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함

- 또한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의 경우,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림 III-1 영국 FCA 지침상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 해당 여부



2. 일본

- 일본에서도 금융청(金融庁)의 감독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일본 금융청의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한 감독지침」(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에서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 금융청은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하였음

-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인지, 해당 서비스가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해당 서비스가 금전적인 손실 보전을 약속하기보다는 용역이나 대체품 제공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무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 및 책임 부담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수리·교환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고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에 대하여 수리·교환을 해주는 경우에도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음

그림 III-2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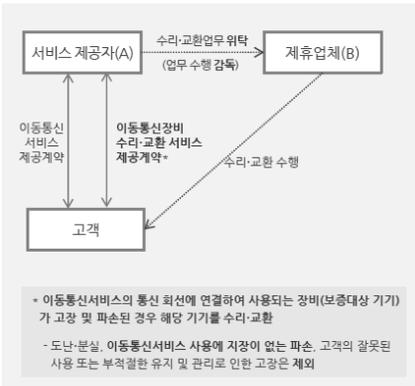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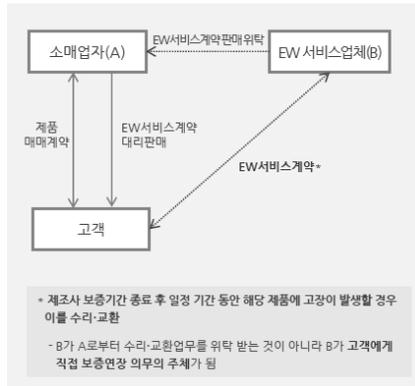


그림 III-3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3. 미국

■ 미국에서는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 이하 'NAIC'라 함)가 제정한 서비스계약 모델법(Service Contracts Model Act)에서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율함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보험법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함
 - 주 보험감독당국은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음

그림 III-4 미국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서비스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또는 통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에 기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의 경우에 해당 재물을 수리·교체·유지하거나 수리·교체·유지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 - 제조사·판매사의 서비스계약은 일부 규제만 적용(전면 배제 여부를 각 주가 자율적으로 판단)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법규 적용 배제
서비스계약에 대한 주요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계약 관리인(administrator)은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registration) 필요 •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 요건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② 일정 금액[(총 수입-기저급보상액)x40%]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 하면서 일정 금액[max {(총 수입-기저급보상액)x5%, 2만5천 달러}]이상을 주 보험감독당국에 예치, 또는 ③ 1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 유지 의무 • 서비스계약상 일정 사항 명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담보 여부, 면책 요건, 자기부담금, 해지 관련 사항 등 • 영업행위시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광고 금지 의무,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의무, 거래 기록 보관 의무 등 • 주 보험감독당국의 조사·검사 및 제재 권한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서비스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담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나, 주별 입법례에 따라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도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가 많음

표 III-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해외 보험 규제 현황 요약

구분	영국	일본	미국
규율근거	• FCA 지침	• 금융청(金融廳) 감독지침	• NAIC 모델법
서비스 제공자	제조사·판매사 • 원칙적으로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 서비스보다 내용·범위·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 →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다만, 제3자의 경우보다 약한 수준의 규제
	제3자 • 보험에 해당	•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음 - 등록 의무, 재무 규제, 주 보험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등
담보 범위 (파손 담보 여부)	• 파손 담보 가능 여부는 불명확 - 다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 담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있음	• 주별 입법례에 따라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담보 가능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이 모호한 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에서는 감독당국 지침이나 법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실무에서 보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규 등에 명시하는 것임
- 현재 시장에서의 실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보험 시장이나 보증연장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법에 규정된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좀 더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고, 이를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인정하거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음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판매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증대되는 경우이므로 보험 규제 필요성, 보험회사와의 규제 차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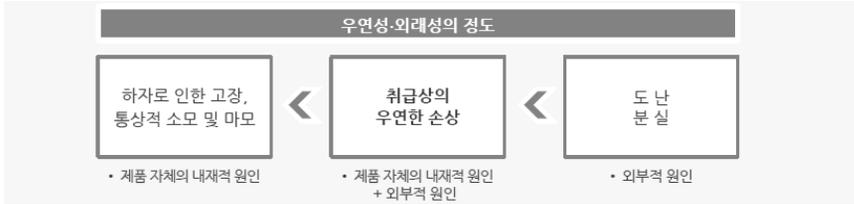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제3자가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담보의 연장선상이나 부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함
-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고장 등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를 집적, 관리한다는 것은 보험업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해줄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물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나 경쟁촉진 필요성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 허용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의 경우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에 있어 그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오직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V-1 담보 항목별 우연성·외래성의 정도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하는 것이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제품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와 외부적 원인에 의한 파손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험으로의 담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그렇다면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보증연장 서비스 담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일 것임
-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수반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제공자 측면에서든, 담보 범위 측면에서든,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규제(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밖에 불안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의 수준 및 내용은 해당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필요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그 밖에도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정립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추가 검토 사항이 제기될 수 있겠음
 - 보증연장 서비스 대상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 제품별로 차등하여 규제할 것인지 여부(예컨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차등 규제)
 - 보험업법 측면에서 규제할 것인지, 경쟁법적 측면에서 규제할 것인지 여부
 - 보험업법에서 규율할 것인지, 보험과 구분이 모호한 서비스계약들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별도의 법규를 마련할 것인지, 감독당국 지침 등을 통해서 다룰 것인지 여부 등

V. 토론내용 요약

1. 패널토론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EW(Extended Warranty)가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
 - 대법원 판례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급부로서 금전이 아닌 용역이 제공되는 사안에 대해 보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나(대법원 87도565 판결, 대법원 2013도10457 판결), 단지 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고 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판례 해석상 EW가 보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좁은 의미의 EW에 대해서도 서비스 가액 등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수입자동차의 경우 EW 서비스 수수료가 고액일 수 있는데, 이처럼 서비스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나 자격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넓은 의미의 EW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캐피탈사, 파이낸스사)의 EW 판매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음
 - 제조사·판매사의 계열회사로서 판매와 연계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캐피탈사, 파이낸스사 등이 EW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일본의 No Action Letter에서도 물건의 판매와 관련하여 대출을 제공한 금융사가 EW를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판매사와 일체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EW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판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EW 판매는 허용할 필요가 없을지 검토해보면 좋을 것임
- EW의 담보 범위 확대의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연계보험 활성화 방안과도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2014년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연계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 EW의 담보 범위를 파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경우 EW와 연계보험의 영역이 서로 중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연계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이필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무)

-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EW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의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함
 - 제조사·판매사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제3자인 경우 소비자가 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음
 - 실제로 기존에 보험에 유사한 사업들이 실패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많음(DCDS, 상조업, 공제조합 등)
- EW를 허용하더라도 소비자 편익 및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감독당국이 EW 서비스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거나, 또는 EW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보험 산업은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EW를 허용하는 경우 보험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 EW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외에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종옥」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재적 하자과 결부된 파손’은 EW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EW 서비스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 내용은 고장, 파손, 도난, 분실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파손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음
 - 내재적 하자과 외부 충격이 결합된 파손의 경우 보험의 담보 범위인지 EW의 담보 범위인지 모호할 수 있음
 - 보험에서는 내재적 하자가 결합된 부분으므로 담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소지가 있고, EW에서는 외부 충격이 결합된 부분으므로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것임
- EW와 보험을 결합해서, EW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되 뒷단에서 보험(CLIP) 가입을 의무화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음
 - 판매나 보상 측면에서 보험보다는 EW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접근성이나 효용이 클 수 있으므로, EW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CLIP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EW와 관련된 소비자의 니즈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법적 논란 때문에 EW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감독당국도 유권해석과 지침 등을 통해 경계선을 명확히해주고, 손해보험사들도 EW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제공자 확대 측면에서는 EW 서비스 제공자를 제3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 외국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 영역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음
- 서비스 제공자를 제3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DCDS나 상조업 등 과거의 사례를 충분히 고찰하고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규정이나 근거하에서 엄격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임

「태현수」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대상 영업의 주된 목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험보장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험으로 볼 것은 아니며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대상 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서비스 제공자가 제조사·판매사인 경우 또는 제3자인 경우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해당 영업의 주된 목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제조사·판매사가 EW를 제공하는 경우 그 EW로 인한 위험보장이 대상 영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 IFRS 17 기준서상으로도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워런티에 대해서는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
-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일차적으로는 소비자가 적은 비용(가격, 또는 접근성 측면에서)으로 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장래의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할 것임
 - 소비자의 수요는 있는데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고 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형성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일 것임
 - 현재는 유권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을 통해서 추상적인 법 해석을 구체화하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W와 보험 규제 부분에 대해 법적 불명확성을 낮출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임

2. 참석자 Q&A

「심정보」 (스위스재보험 상무)

- EW 서비스의 보험으로서의 영역 문제와 관련, 자연소모나 자연마모의 경우 타임리밋 여부에 따라 보험상품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함

「김경주」 (AIG손해보험 실장)

- 미국의 서비스계약모델법의 탄생 배경은 EW가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
 - 기업이 원래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워런티를 유료로 제공하자 이를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서 출발한 것이고, 규제를 하려다 보니 보험과 유사한 영역이어서 보험과 유사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게 된 것임
- 사업자들에게도 보험과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보험 아니면 서비스로 양분하기보다는 보험도 있고 서비스도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할 것임

정책세미나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발행일 | 2018년 4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